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6-109호

공성아파트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2-3호(2022. 1. 6.)로 공성아파트 소규모주택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승인고시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5, 공성아파트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

나. 명칭 : 공성아파트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5

나. 면적 : 2,462.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공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조합장 임문현)

나.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7-6, 1층

4.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본 고시일과 같음

6. 사업시행변경(변경)인가의 주요내용

○ 변경사유: 관리처분계획 변경

- 정비사업비 증가, 조합원 분담금 증가, 비례율 감소, 현금청산자 추가 등

7. 관계도서 : 생략

※ 관계도서 및 세부내용은 동대문구청 주택과(☎ 02-2127-5652) 및 사업시행자 공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02-958-0200)의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02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환경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용자 지원을 통한 환경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본칙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라.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

- 메 일 : dawny@ddm.go.kr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동대문구 청소행정과(☎02-2127-4729)

바. 기타 : 기한 내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6-
----------	-------

제출연월일 : 2026.

제 출 자 : 청소행정과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환경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용자 지원을 통한 환경공무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본칙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26. 7. 9. ~ 7. 29.

라. 첨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2) 관계법규 발췌문 1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례 제90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조례 제90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 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 부칙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u>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 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의 존속기한은 203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u> 조례 제903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 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 부칙 <u>〈삭 제〉</u>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의견서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가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소			
의견제출 내용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귀하				